산업보건 주요뉴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연석회의 개최

27층 발견자 구조방안 등 "탐색 구조 · 계획" 이행현황 점검
"건축물 붕괴위험 감소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위험요인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2.3.(목)
전문가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위험요인 확인 예정

2.2.(수) 13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광주광역시 시장 이용섭)는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광주시청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28. 결정한 "탐색구조 계획"과 "건축물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지난 1.25.(화) 27층에서 발견한 근로자에 대한 구조방안과 향후 탐색 · 구조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31.(월) 28층 발견 근로자를 구조함에 따라, 27층 발견 근로자에 대한 구조 활동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28층 바닥 슬라브에 있는 잔해물을 제거하여 붕괴를 방지한 후, 28층 바닥을 천공하여 구조할 예정이다.
미발견 근로자(3명)에 대한 182명의 구조대원을 동원한(전국 전문구조대원 60명 포함) 24시간 탐색 · 구조 활동도 지속한다. 현재, 호이스트카 설치(1.31.), 타워크레인 상단부 추가제거(1.30.)에 따라 인력 · 장비 이동 및 잔해물 제거 작업이 보다 용이해졌고 남측 외벽 및 외벽 좌측 대형 잔재물 안정화 조치(1.30.)에 따라서, 구조물의 대형 추가 붕괴 위험은 많이 낮춘 상황이다.

탐색 · 구조 활동 중 수시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즉시 대처 필요성에 따라, 지난 1.29.(토) 17시경 발견한 24층 천장부 균열 확대에 대해서는 지지대 설치 등 보강작업이 즉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24층 균열부, 벽체, 기둥 등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계측기 20개 설치 등).
금일 오전에도 콘크리트 잔해물이 낙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낙하에 대비하여 설치한 와이어

고정으로 큰 사고는 막았고, 이상징후 확인 즉시 주변 작업자를 긴급 대피함에 따라 인명피해도 없었다. 향후 콘크리트 잔해물 낙하에 따른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감시 CCTV 추가 설치, 주변 도로 출입 통제, 긴급 대피 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2.3.(목)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한 탐색 · 구조 활동을 위해 건물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재점검하고, 추가 위험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 · 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 · 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한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16,718개소(63.3%)를 적발하여 시정을 완료했다.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한다.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 · 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 · 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점검 · 연계감독)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 · 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하여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 ·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기획감독)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본사 · 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 · 원청 감독)

본사 · 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 · 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사후감독)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한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 ·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인다.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 ·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여 개선방향(위험요인 확인 · 개선절차 등)도 제시한다. (감독결과 강평 · 면담 시 포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 · 면담을 통해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 ·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동종 ·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 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